

#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6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5. .

제안자 : 안산시장

## 개정이유

- 상업지역내 주상복합비율의 조정, 공동위원회 구성, 경관지구 종세분사항 정비,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사항 및 효력사항 정비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조항 정비, 주거지역내 차고지 허용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- 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과 1,2종 자연·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사항이 상충되어 건축 제한사항을 정비함(안 제30조부터 제34조).
- 나.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8조의2, 제78조의3).
- 다.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과 보칙중 지구단위계획 효력사항이 상충되어 보칙조항을 정비함(안 제79조).
- 라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(안 제80조).
- 마.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완화함(안 별표 7, 별표 8, 별표 9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**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**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(용도지구의 지정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 삭제<2005.12.7>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(권한의 위임 및 위탁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(용도지구의 지정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(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]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8]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 9]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 10]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 14]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(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)
-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
-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
-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9조 내지 제18조
-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19조(공동위원회 운영등)

**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**

**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**

**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**

- 입법예고 : 2007. 3. 26 ~ 2007. 4. 15(20일간)

#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중 “제1호부터 제9호” 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한다.

제5장 다음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절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

제29조 다음에 제2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절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

제30조 및 제31조를 삭제한다.

제32조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제33조를 삭제한다.

제34조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4조(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제35조제1호를 같은조제4호로 하고, 같은조제2호 및 제3호를 같은조제5호 및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조제4호부터 제7호를 같은조제7호부터 제10호로 하고, 같은조에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(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)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(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) 및 골프장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(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)
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(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)

나. 위험물제조소

다. 위험물저장소

라. 유독물보관·저장시설

제39조제1호 중 “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” 를 “자연경관지구·전통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” 로 하고, 같은조의 제2호·제3호·제5호·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조제4호 중 “5층 또는 20미터” 를 “3층 또는 12미터” 로 한다.

제55조 다음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용도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폐율·용적율 등

제78조 다음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공동위원회

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8조의2(구성) ①시장은 법 제30조제3항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공동위원회(이하 “공동위원회” 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1.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안산시건축위원회(이하 “건축위원회” 라 한다)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

2. 시장은 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

3.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.

제78조의 3 (운영 등)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7조 및 제68조, 제70조부터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9조를 삭제한다.

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0조(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)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,000원으로 한다.(다만,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,500원)

별표 4 제2호 중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타.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차고

별표 7 제2호 중 나목부터 아목을 같은호 다목부터 자목으로 하고, 같은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

별표 8 제2호나목 중 “70퍼센트 이하” 를 “90퍼센트 미만” 으로 한다.

별표 9 제2호가목 중 “70퍼센트 이하” 를 “90퍼센트 미만” 으로 한다.

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(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.

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(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.

[별표 13]

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29조제1항제13호 관련)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  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이하 “별표 1”이라 한다)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
  - 나.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- 다.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
  - 라.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
  - 마.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
  - 바.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  - 사.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  - 아.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. 다만,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.
  - 자.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  - 차.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)
  - 카.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  - 타.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  - 파.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
  - 하.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
  - 거.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2.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  - 가.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
  - 나.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
  - 다.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  - 라.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
  - 마.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
  - 바.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를 제외한다)
  - 사.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
  - 아.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11조 (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)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지역·지구·구역안에서의 제한 〈신설〉</p> <p>제29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~18. (생략) ② ~ ③항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 <p>제30조 (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) ①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1 ~ 15. (생략) ②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, 제6호, 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제31조 (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31조제3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1 ~ 15. (생략)</p> <p>제32조 (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31조제3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1~15. (생략)</p>	<p>제11조 (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)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지역·지구·구역안에서의 제한 제1절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</p> <p>제29조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용도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제32조 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1~15. (현행과 같음)</p>			

제33조 (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<삭제>

영 제31조제3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~17. (생략)

제34조 (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31조제3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~15. (생략)

제35조 (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3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를 제외한다)
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을 제외한다)
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·가축시설·도축장·도계장에 한한다)

제34조 (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~15. (현행과 같음)

제35조 (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) --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(옥외에 철타이 있는 것에 한한다)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(옥외에 철타이 있는 것에 한한다) 및 골프장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

4. -----
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(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)
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(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)

나. 위험물제조소

다. 위험물저장소

라. 유독물보관·저장시설

7. -----

8.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분  
노 및 쓰레기처리시설
-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  
지관련시설

- 9. -----  
-----
- 10. -----  
-----

제39조 (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) 영 제72  
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 
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·층수는 다음 각호  
의 1과 같다. 다만,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  
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 
쳐 지정·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에서  
정한 높이의 1.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.

제39조 (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 1. 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 : 3층  
또는 12미터 (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  
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  
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  
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  
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미터)
- 2. 제1종자연경관지구 : 3층 또는 12미터  
이하
- 3. 제2종자연경관지구 : 5층 또는 20미터  
이하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이외  
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 
이하로 한다)
- 4. 수변경관지구 : 5층 또는 20미터 (자연  
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  
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  
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
지정·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 
26미터)
- 5. 제1종수변경관지구 : 3층 또는 12미터  
이하
- 6. 제2종수변경관지구 : 5층 또는 20미터  
이하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이외  
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 
이하로 한다)

- 1. 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, 사가지경관지구 :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<삭제>

<삭제>

- 4. 수변경관지구 : 3층 또는 12미터 (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<삭제>

<삭제>

제55조 (생략)

<신 설>

제56조 (생략)

제78조 (생략)

<신설>

제55조 (현행과 같음)

제3절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·용적율등

제56조 (현행과 같음)

제78조 (현행과 같음)

제3절 공동위원회

<신설>

**제78조의 2 (구성)**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공동위원회(이하 “공동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1.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안산시건축위원회(이하 “건축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

2. 시장은 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

3.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.

**제74조의 3(운영 등)**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7조 및 제68조, 제70조부터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신설>

**제 7 장 보 칙**

**제79조 (지구단위계획의 효력)**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종전의 지구단위계획(도시설계)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. 다만,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 7 장 보 칙**

<삭제>

**제80조 (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)**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.

**제80조 (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)**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,000원으로 한다.(다만,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,500원)



**【별표 9】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29조제1항제9호 관련)**  
 1. (생략)  
 2.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
 가.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  
 나 ~ 하. (생략)

**【별표 9】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29조제1항제9호 관련)**  
 1. (현행과 같음)  
 2. -----  
 가.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90퍼  
센트 미만인 것  
 나 ~ 하. (현행과 같음)

**【별표 13】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29조제1항제13호 관련)**  
 1. (생략)  
 2.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
 가 ~ 나. (생략)  
 다.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
 라. (생략)  
라.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
마.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(축사를 제외한다)  
바.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
사.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
**【별표 13】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29조제1항제13호 관련)**  
 1. (현행과 같음)  
 2. -----  
 가 ~ 나. (현행과 같음)  
 다. -----  
라목-----  
 라. (현행과 같음)  
 마. -----  
 바. -----  
 -----  
 사. -----  
 아. -----

#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56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5. .  
발 의 자 : 도시건설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한 건축물의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,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 높이와 층수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고,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중·장기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함.

## 주요골자

- 가.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한 건축물의 적용 규정을 정확히 규정함. (안 제35조)
- 나.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 높이를 층수에 비례하도록 조정함. (안 제39조)
- 다.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수정함. (안 별표7, 8, 9)

#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5조의 제목 “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”을 “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1호 중 “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”을 “별표1 제4호 라목 중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2호 중 “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(옥외에 철타이 있는 것에 한한다) 및 골프장”을 “별표1 제13호 가목 중 골프연습장(옥외에 철타이 있는 것에 한한다) 및 같은호 다목 중 골프장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4호중 “6층 또는 26미터”를 “6층 또는 24미터”로 한다.

제74조의3을 제78조의3으로 한다.

별표7제2호나목 중 “90퍼센트 미만인 것”을 “70퍼센트 이하인 것”으로 한다.

별표8제2호나목 중 “90퍼센트 미만인 것”을 “70퍼센트 이하인 것”으로 한다.

별표9제2호가목 중 “90퍼센트 미만인 것”을 “70퍼센트 이하인 것”으로 한다.

# 조 문 대 비 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5조(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) (생략)</p> <p>1.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(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)</p> <p>2.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(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) 및 골프장</p> <p>제39조(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) 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수변경관지구 : 3층 또는 12미터 (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6미터)</p> <p>제74조의3(운영 등)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7조 및 제68조, 제70조부터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[별표7]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</p> <p>다.~자. (생략)</p> <p>[별표8]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	<p>제35조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----- 별표1 제4호 라목 중 ----- -----</p> <p>2. ----- 별표1 제13호 가목 중 골프연습장(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) 및 같은호 다목 중 골프장</p> <p>제39조(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) (원안과 같음)</p> <p>1.~3. (원안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6층 또는 24미터)</p> <p>제78조의3(운영 등) ----- ----- -----</p> <p>[별표7]</p> <p>1.~2. (원안과 같음)</p> <p>가. (원안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70퍼센트 이하인 것</p> <p>다.~자. (원안과 같음)</p> <p>[별표8]</p> <p>1.~2. (원안과 같음)</p> <p>가. (원안과 같음)</p>

나.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
다.~자. (생략)

[별표9]

1.~2. (생략)  
가.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
나.~하. (생략)

나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70퍼센트 이하인 것  
다.~자. (원안과 같음)

[별표9]

1.~2. (원안과 같음)  
가. -----  
-----  
-----  
70퍼센트 이하인 것  
나.~하. (원안과 같음)